

■ 변산반도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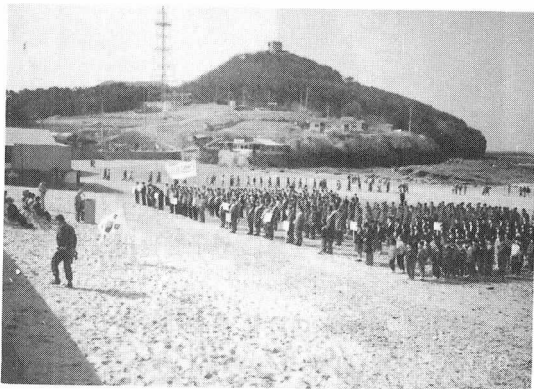
공원내 쓰레기 수거 소각 및 하수구 청소

변산반도 지부(지부장 곽진용)는 지난 3월9일 10시부터 채석장 및 변산해수욕장 주변에서 회원 86명이 참가하여 공원내의 쓰레기를 수거소각처리하고 하수구를 말끔히 청소했다.

한편 3월20일에는 부안군청의 주관으로 지부회원 123명, 일반인 38명, 군인 150명, 학생 150명 등 총 461명이 참가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전역을 대상으로 해상오물수거, 모래사장 청소, 쓰레기 소각등 탐방객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3월9일 채석장 주변에 파도에 밀려온 철재를 회원들이 수거하고 있다.



3월20일 캠페인 행사에서 이승군수의 인사.

■ 칠갑산 지부

'93년도 정기총회

朴七星 지부장유임 1백만원 기금도

지난 3월16일 본회 칠갑산지부(지부장 朴七星)는 93년도 정기총회를 청양읍 소재 청솔회관에서 가졌다.

지난 3월16일 국립공원협회 칠갑산지부 93년도 정기총회가 청양읍 청솔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93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통과한후 임기만료된 임원을 개선하고 새로이 고문을 추대키로 결의했다.

재신임을 얻어 연임하게 된 박칠성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초의 공원협회지부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고 협회발전 기금으로 1백만원과 회원단합을 위한 기금도 약속하였다.

이날 추대된 고문과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정동기(청양군수), 안종일(문화원장), 유영현(주류협동), 김종대(방갈농장). ▲ 지부장 : 박칠성(칠갑산장)유임. ▲ 부지부장 : 구낙서(건설업), 최병우(군의원). ▲ 운영위원 : 윤재순(군의회 부의장), 김의웅(청양신문 발행인), 홍성권(단대농장 소장), 김종준(바르게 살기회장)이상 유임. 한광수(청양산악회장), 김천호(작천울과원), 김근환(청양금오관광) ▲ 감사 : 전관진(청양유아원장)유임, 김수일(시온포목) ▲ 사무국장 : 차경환(청신여중 교감)유임.

■ 팔공산 지부

팔공산도립공원 안내책자 완성단계

팔공산도립공원에 관한 기존안내 책자의 미비한 점과 잘못 표기된 것을 보완 및 수정하고 달라진 곳을 새로 추가하는등 완벽한 팔공산소개 팸플릿을 세

로 발간키 위하여 자료를 수집해오던 본협회 팔공산 지부(지부장 金宗浩)는 최종정리를 마치고 곧 인쇄에 들어가게 됐다는 반가운소식...

93년도 사업계획(자연보호 등산, 수련등산회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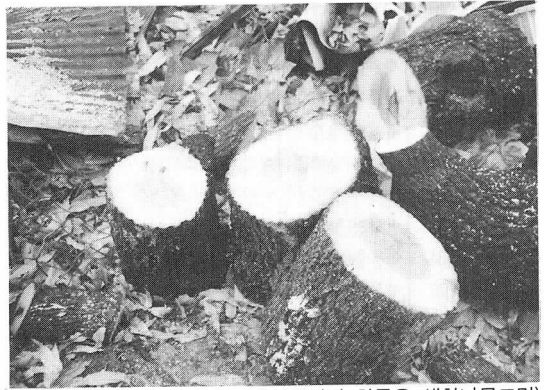
## ■ 북한산 서부지부

### 사기동지역서 식목일행사 가져

북한산 서부지부(지부장 鄭德鎭이사)는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북한산국립공원 서부지역인 사기동 지역에서 회원 22명이 참석하여 잣나무 320주, 무궁화 300주 등을 심고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 산불예방 계도와 자연훼손 고발도

덕산지부에서는 지난 1월2일 회원 52명이 강화도 마니산과 전등사 부근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을 벌이던 중 난방을 목적으로 참나무를 도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강화군 산림과에 고발조치하였다.



(지부회원들이 목격한 전등사주변의 화목용 생참나무도막)

## ■ 덕산도립공원 지부

### 93년도 정기총회

덕산도립공원 지부(지부장 陳俊赫)는 지난 1월16일 대원장(온양소재)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9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 揭示板

### 年會費를 滯納한 會員께 알립니다.

해마다 年會費를 納付하시고 會員證을 更新해야만 會員으로서의 資格과 權利가 保障됩니다.

當協會에서는 會費滯納이 2年以上인 會員에 대하여 1993年 6月30日을 기해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無資格 會員으로 分類할 方針을 세웠음을 알려드립니다.

#### ※ 定款規程

#### 1. 定款 第6條(權利 및 義務)

- ① 會員은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과 重要한 事項에 對한 議決權을 가지며 本協會活動으로 因한 惠澤을 平等하게 받을 權利가 있다. 다만 特別會員은 會費納付의 義務가 免除되고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지 아니한다.

- ② 會員은 本協會의 定款 및 決議事項을 遵守하고 會費納付와 自然公園의 保存과 올바른 利用을 위해 其他의 模範이 될 義務가 있다.

#### 2. 定款 第7條(懲戒 및 資格喪失)

- ① 會員이 會의 名譽를 失墜시키거나 會員의 義務를 違背한 事實이 있을 때 事案에 따라 警告·停權 또는 除名한다.
- ② 會員이 2年以上 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脫退할 것으로 보며 이미 脫退로 處理된 會員이 再入會할 境遇는 滯納會費를 納入해야 한다.

國立公園協會 事務局